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행정기관의공모전운영에관한
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구성방법과 심사방법,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모전의 정의 및 적용 제외(안 제2조 및 제3조)

- 1) 공모전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을 뜻함
- 2) 행정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상금·상품이 소액인 공모전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공모전 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5조 및 제6조)

- 1)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

증의 방법, 수상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모전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2)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공고 시 공모의 분야·목적·내용, 응모자격·방법, 수상작 선정 방법 및 인원, 시상내용, 저작권에 관한 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공모전의 심사(안 제8조 및 제9조)

- 1) 행정기관의 장은 각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응모작 심사 및 수상작 선정, 부정행위의 검증·판단 및 부정행위자 결정, 수상작 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심의함
- 2)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응모자의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행정기관 내부 심사 등 사전 심사단계를 둘 수 있음

라. 부정행위 검증(안 제10조)

- 1)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행정기관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여 온라인 등으로 10일 이상 공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부정행위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마. 부정행위의 처리(안 제12조 및 제13조)

- 1)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자로 결정하고 수상에서 배제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자의 명단과 부정행위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다른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2) 행정기관의 장은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수상작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수여된 상장·상금·상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응모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바. 공모전의 관리(안 제14조 및 제15조)

- 1)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로 공모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 확인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 1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각 행정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공정성, 신뢰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콘테스트 등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응모”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단순한 의견의 차이는 부정행위에서 제외한다.
가.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나.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
 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다. “변조”는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라. “부당한 중복응모”는 중복응모를 제한하고 있는 공모전에서, 응
 모자가 자신이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실질
 적으로 유사한 응모작을 출처표시 없이 제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
 도로 정한 행위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
 로 순수한 교육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상금 또
 는 상품을 수여하는 공모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모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모전의 시행

제5조(계획 수립)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모의 목적, 내용 및 결과물 등에 대하여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모전의 개최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전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심사기준·방법
2.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3. 수상후보작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4. 수상 취소에 관한 사항
5. 상장·상금·상품 환수, 공모 참여의 제한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6.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전 공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응모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모전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의 분야, 목적 및 내용
2. 응모자격·방법
3. 수상작 선정 방법 및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내용
5. 저작권에 관한 사항

6. 수상작 공개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사항

8.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모전별 운영기준

9.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공모전을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언론매체, 광고, 게시판,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모전을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응모) ① 행정기관의 장은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 플랫폼 등 쉽고 편리한 응모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부정행위 검증 방법, 수상취소 등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방법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모전별 운영기준의 내용을 안내하고, 그에 대한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모자가 응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모전별 운영기준의 내용 안내 및 응모자의 동의

2. 부정행위 방지 및 정당한 응모에 대한 서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공모전 심사위원회)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각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 심사 및 수상작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판단 및 부정행위자 결정

3. 수상작 결과 공개

4.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공모 내용을 2개 분야 이상으로 나누어 심사할 경우, 분야별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공모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공모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언, 감정 또는 자문을 한 사항

4. 심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모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공모전 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⑥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해당 공모전이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모전 심사)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응모자의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② 공모전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행정기관 내부 심사 등 사전 심사단계를 둘 수 있다.

③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과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온라인 투표심사 등 일반 국민이 공모전 심사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심사단계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제10조(부정행위 검증)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 검증을 위하여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이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검증을 할 때,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여 온라인 등으로 10일 이상 공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부정행위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일반에 공개할 경우 저작권 또는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창작물 또는 산업재산·기술 등의 응모작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공개 검증의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수상작이 확정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 등 수상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비공개하거나, 가명 처리 등 결과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시상 내역
2. 수상작의 제목, 내용
3. 수상작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전에 관한 사항

제3장 부정행위의 처리

제12조(부정행위자 결정 및 통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응모자를 부정행위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의 명단

과 부정행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다른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정행위자의 명단을 관리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 공정한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수상 취소) ① 행정기관의 장은 수상작에 대한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수상작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수상작에 대한 수상을 취소하고 수여된 상장·상금·상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환수를 하려는 경우, 최소 10일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응모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응모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공모전의 관리

제14조(관리체계)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을 총괄 및 지원하는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관별로 공모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각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와 제14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공모전의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연 락 처	(044) 205 - 2434